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윤후덕 · 김태년 · 김성범
김문수 · 김정호 · 박민규
백승아 · 이광재 · 정태호
정일영 · 임미애 · 한정애
김성희 · 황명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 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제1항제2호가목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5호의5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생략)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u>한정한다</u>)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 ----- -----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②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통신판매중개</u>

③ (생 략)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 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 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 (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 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 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생 략)	<u>의뢰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제20조제3항----- ----- ----- 나. (현행과 같음)
--	--

② ~ ⑦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4. (생략) 5의5. <u>제20조제3항</u>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 8. (생략) ⑤ ~ ⑧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5의4. (현행과 같음) 5의5. <u>제20조제4항</u>----- ----- ----- 6. ~ 8.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	---